

페이업 서비스 이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페이업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제공하는 '페이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일 반 조 항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페이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페이업 서비스: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Liveshop,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페이업 시스템: "을"이 페이업 서비스를 위하여 "결제기관"과 연동하여 설치·운영하는 결제 및 지불중개용 등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고객: "을"의 서비스를 이용해 "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 가맹점: 고객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페이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PG사, 신용카드회사 등의 거래승인기관 또는 "을"이 재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이하 "원천사"라 한다)를 말한다.
-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페이업 서비스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한다.
- 승인: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PG사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PG사를 통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정산: 페이업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 "갑"이 "을"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등)이 상이한 거래
 - "갑"의 일방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 분실, 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 현금용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 관련법규, 결제기관 또는 PG사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제3조 (서비스 이용 조건)

- 본 계약 및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결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페이업 서비스"는 연중무휴 전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 "갑"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 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하며, 상품 등의 제공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성인 전용 상품 등은 미성년자에게 제공, 판매하지 못한다.

제4조 ("갑"의 책임과 의무)

-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로 한 이외의 용도로 "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이외의 서비스, 상품의 판매에 페이업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갑"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취소, 환불, 클레임 처리 등 제반 고객응대사항을 담당한다. 단 고객응대 내용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 "갑"의 상품 등의 내용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를 위하여,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갑"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갑"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8.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시 사유 발생 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9.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갑"의 사업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10."을"이 "갑"을 대신하여 PG 사를 통해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1.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이 페이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페이업 시스템"을 제공한다.
2. "을"은 "페이업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한다.
3. "을"은 "페이업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을"은 "결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에 대해 계약 조건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정산"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이 페이업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대금의 결제내역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상품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결제대금을 "결제기관"에 청구하며, 상품 가격정보와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6 조 ("고객" 보호를 위한 "갑"의 준수사항)

1. "갑"이 "고객"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영업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과 상계 할 수 있다.
 - 가)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 시킨 경우
 - 나)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 다) 상품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주문취소나 가입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 라) 상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 마) "을"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과 다르게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① 계약과 다른 사이트에서의 서비스 제공
 - ② "갑"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경우
 - ③ 기타 불법·부당 행위로 "고객"에게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④ 현금할인 및 재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소액대출로 활용할 경우 포함)
 - ⑤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한 영업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갑"에게 "갑"의 "고객" 중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에 대하여 결제 차단 요청을 할 경우, "갑"은 즉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종단하여야 한다.
3. "갑"이 본 조1항과 같은 영업을 할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정산 대금의 보류 및 정산방법의 변경
 - 나. 신속한 결제의 정지 및 거래의 취소
 - 다. 계약 해지
 - 라. 선 정산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1. "을"은 "갑"에게 페이업 서비스 "서비스 수수료", 초기 가입비 등의 이용료를 "별첨1. 거래등록 신청서"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갑"은 1항의 "서비스 수수료"를 "별첨1. 거래등록 신청서" 등에서 정한 대금정산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정산)

1. 페이업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간의 대금정산 시 선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산은 페이업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확정거래에 한정한다.
3. "갑"에게 정산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차 회 정산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을"은 10만원 미만 정산대금에 대해 소정의 이체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할 수 있다.
4. "을"은 정산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정한 이메일로 "을"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5.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
6.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정산대금의 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7. 상호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정산대금 및 "서비스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8. "결제기관" 정책의 변경으로 "서비스 수수료" 구조가 변경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9. "을"은 "결제기관"의 사유(결제금액의 입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갑"에게 정산하지 못해 발행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통지의무)

1. "갑"은 다음 각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

- 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 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 나.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2. "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서비스 수수료"와 대금정산 절차를 수정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0 조 (고객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 1. "고객"이 "갑"에게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당해 승인취소 요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2. "고객"이 "을" 또는 "결제기관"에 직접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갑"이 응대, 처리하여야 하며 "을"은 동 취소 요청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동 취소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 3. "고객"이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객"의 이의제기를 해결해야 한다.
- 4. "결제기관"이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의제기 및 취소 또는 환불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이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대금은 "을"이 "갑"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 5. "갑"과 "을"이 별도 정한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6. "갑"은 "고객"의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 등에 대해 거래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기관"의 거래대금 청구자료 생성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이 "고객"에게 이미 거래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 7. "갑"과 "을"은 고객의 모든 이의제기 해결 및 거래취소 또는 환불문제의 원인규명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8. "고객"의 거래 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 지급의 보류)

- "을"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갑"의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가. "갑"이 위, 변조에 의해 불량 매출 또는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매출정보를 조작하여 중복 또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 나. "갑"이 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 다. 법원, 경찰서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 라. "을" 또는 결제기관에게 "갑"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날로부터 "갑"에 대하여 "정산"

금액 중 (가)압류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정산"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정산한다.

마. "정산"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간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정산"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보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제 12 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담보 적용)

- 1. "을"이 "갑"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 거래, 본 계약 제6조의 위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미수,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 일부
 - 나.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 다.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 2.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을 지급 보류할 수 있고, 보류된 금액에서 당해 채무 및 지연이자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 3. "갑"이 본 조에 따른 담보를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1개월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 (신용카드 결제 특약)

- 1.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 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을" 또는 "원천사"의 명의로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의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3. 신용카드사 등 결제기관의 요청 시 "갑"은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4.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취소 및 반송된 거래는 "갑"의 책임으로 재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전 3항 및 5항의 경우 정산대상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1.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갑"이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3.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을"은 "갑"과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귀책사유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소유권 및 양도금지)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2. "갑"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불가항력)

1.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간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나.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갑" 또는 "을"이 파산, 청산, 회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라.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 마.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등록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휴대폰 결제" 특약사항>

제1조 (정의)

1. 본인인증: 결제수단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일 입력함으로써 "결제기관"으로부터 결제수단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2. 이의조정: 수납정산을 정산방법으로 약정한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의 환불 요청에 의해 환불된 금액을 차회 "정산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청구조정: 수납정산 이외를 정산방법으로 약정한 "가맹점"에 대해 고객의 취소 요청에 의해 취소된 금액을 차회 "정산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재정산: "가맹점"과 "회사"가 약정한 재정산 시기에 따라 누적된 미수납율과 유보율/미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회 "정산지급액"에 더하여 지급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하는 정산 방법을 말한다.

제2조 (고객보호 의무)

1. "가맹점"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KPBIA) 및 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의 지침과 서비스고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일반조항" 제6조 3 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고객과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유무선전화결제중재
3. 센터에서 정하는 운영비(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비)를 부담하며 해당 운영비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지급액"에서 매월 차감하여 대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유무선전화결제중재센터에 납부에 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정산 특약사항)

1. "가맹점"의 월별 1회 차 수납율이 70% 미만이거나 "가맹점"의 누적수납율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수수료" 또는 정산방법,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RM정책(Risk Management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가맹점"의 "정산대상금액"은 "이의조정" 또는 "청구조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3. “가맹점”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게 “가맹점”과 “고객”이 체결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로 “회사”로 정하는 약정을 “회사”가 가맹점을 대리하여 “고객”과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환불로 처리된 경우는 가맹점으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취소 및 환불)

1. 휴대폰 거래의 경우는 당월 거래에 한해 취소 가능하며, 월이 지난 경우는 “가맹점”에서 환불로 처리해야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

상호 :
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 :

[을]

상호 : 페이업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674-88-0050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2길 10 3층
(논현동, 우연빌딩)

대표이사 : 최진선, 문병래 (인)

(인)

[별첨 1]

거래등록신청서

1. 기본정보

상호		사업자번호	
휴대폰		이메일	
사업자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폰	E-mail	

* 개인사업자 : 주민번호 앞 6 자리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2. 서비스 정보

결제 ID	판매 상품/서비스				
웹사이트 (판매상품)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결제 수단	수수료(VAT별도)	정산 주기 (영업일기준)	정산방식	기타
	신용카드 (수기결제, SMS 결제, URL 결제 등)	%	D+ 일	일정산 (매일 승인분)	수수료 선취정산
	휴대폰(실물)	%	D+ 일	일정산	결제대금 선정산
	가상계좌	원/건			
SMS(VAT 별도)*	200 건 이내 무료(초과시 20 원/건)	LMS(VAT 별도)*	100 건 이내 무료(초과시 50 원/건)		
등록비(VAT 별도)		알림톡*		15원/건	
이행보증증권*		신용카드 월 한도*			
특약사항					

* 신용카드 월 한도: 매월 1일~ 말일까지의 승인 금액

* 보증보험 가입액에 따른 승인한도 : 업종과 매출 변동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액 또는 승인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SMS, LMS 비용 : SMS 결제 서비스 및 결제 완료 통보 문자가 기본수량보다 많이 발송될 경우에 한하여 부과함.

3. 입금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혹은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은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자체 없이 통보하기로 한다.

페이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와 같이 거래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페이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상호명,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계약자), 사업장 소재지, 휴대폰 번호, 대표 이메일, 대표전화, 팩스번호, 정산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집목적	본인확인 및 계약 진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회원관리 (민원처리 및 상담, 결제이용내역의 고지 및 주문안내 등) 부정 이용 및 비인가 사용 방지
활용기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은 5년간 보관

그 외 세부사항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자:

(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자:

(인)

* 동의자 서명란에 대표님의 날인 없으면 무효합니다. 반드시 인감날인으로 부탁 드립니다.